

기술규제 최근 동향 설명회 개최

기술규제대응과
02-509-7254

TBT 중앙사무국은 수출기업에 환경 등 기술규제의 최신 동향을 전달하기 위한 설명회를 '09.4.23(목) 14:00에 강남구 삼성동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다.

'08.9월 반쪽한 TBT 중앙사무국은, 최근 범세계적인 경제위기에 따라 각국이 자국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기술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신 정보를 입수하여 기업에 맞춤형으로 전달하는 한편, WTO/TBT 위원회 활동 및 주요 국가들과의 공조를 통하여 기술규제로 인한 기업의 불이익을 최소화 시켜왔다.

이날 설명회에서 기술표준정책국 최형기 국장은, "최근 세계 각국은 경제 위기와 함께 환경규제 및 기술규제를 늘려가고 있으며, 이는 WTO/TBT 위원회가 회원국들로부터 기술규제의 제·개정 정보를 받아 발표하는 TBT 통보문의 개수만 보아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인사말씀을 시작하셨고, (올해 1/4분기에 발표된 TBT 통보문건 수가 27% 이상 증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지난해 9월 TBT 중앙사무국을 개소하고 그간 추진해 오던 무역기술장벽 대응 업무를 확대 강화한 바 있으며 WTO를 통해 입수한 무역기술장벽 통보문을 분석하고 관련 업계에 전달할 전문가 조직을 분야별로 구성하였으며, TBT 포털 홈페이지를 신규 개설하고 운영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의 TBT

에 관한 질문에 답변하고 문제점을 해결하고 있다."고 우리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하셨다.

첫 연재로서 유럽 환경규제의 최신 변동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한 정옥선 박사는, 새로이 시작되는 EuP(에너지 사용제품)에 대한 지침에서 에코디자인 즉 친환경 제품설계 의무를 요구하는데 EL에 20만대 이상 판매하는 다음 세 가지 제품군(운송 수단 제외)이 이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1. 제품 작동을 위해 에너지원(전기, 화석연료, 재생연료)을 사용하는 제품
2. 에너지를 생산, 변환 또는 축적하는 제품
3. 시장 거래되고 에너지 사용 제품에 합체되는 부품으로, 단독 환경성 평가 가능한 것

따라서 상기 제품 제조자는 제품을 시장에 출시 또는 서비스하기 전에 제품의 적합성 평가를 수행하고 CE 마크를 부착한 후 적합성 선언을 하여야 한다.

또한 RoHS의 최근 개정안('08.7.1)에서는 이전 규제에서 제외된 deca-BDE를 예외 조항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에 따라, 이제부터는 검토 대상에 추가된다고 밝혔다. 범위가 확대된 부분은 의료 장비로서, 이는 2014년부터 적용되며 국가 안전보관된 제품도 포함되고, DEHP, BBP, DBP 등

PVC용 가소제와 Hexabromocyclododecane 난연제도 검토 대상에 추가된다고 하였다.

유일재 교수는, 미국 환경청(EPA)이 탄소 나노튜브를 신규 화학물질로 취급하기로 결정하고 사전제조신고(Pre-manufacture notice, PMN)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유럽의 EUC(유럽무연노동조합연합)에서는 나노 기술의 책임 있는 개발을 요구함과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실시하며, 또한 나노 물질을 REACH로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입법을 검토 중인 법안에 나노 물질이나 나노 입자를 함유한 생체의 제조, 수입, 판매자는 사용량과 용도를 정부, 소비자 및 대중에게 공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일본의 환경성 역시 지난 3월 나노 물질 환경위해성을 저감하기 위한 환경배출 지침을 발표했으며, 보건노동성은 이미 지난해 나노-물질 취급 작업안전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유 교수는 "나노 제품

의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생애 주기에 걸친 관리 지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무역대상국의 나노-물질 유해성자료, 물질 안전보건자료 요구나 향후 예상되는 표시제도 등에 대한 규제대응을 위해 정부 주도의 전략수립과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기술규제대응과 이은호 과장은 Economist紙에서 논의된 바대로, 세계적으로 생산 거점이 다각화되고 국제적 분업체제가 강화됨에 따라 각국별로 취하고 있는 각종 비관세 장벽 조치 즉 기술규제들이 국제교역에 미치는 영향이 증폭되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즉, IT제품에 '미국-EU간 기술규제가 관세율 6%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다'는 John Wilson의 '96년도 분석결과를 적용하여 6개국 간 분업을 통해 완성된다고 가정하면, 최종적으로 기업에 떨어지는 부담은 1.06의 6승, 즉 1.42가 된다. 이는 기존 체제에서 보다 42%의 비용 부담을 추가적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된다고 설명했다.



| 기술표준 2009.5